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위생과-7520
등록일자	2016.3.29.
결재일자	2016.3.29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공중위생팀장	위생과장	★보건소장		
이순영	조영출	은승일	전결 03/29 서명옥		
협조자	총무과장 인사팀장	박철수 정찬식			

-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-

2015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(아·미용업) 결과



- 추진기간 : 2015.10.12 ~ 2015.12.31
- 평가대상 : 2,113개소 [이용업, 미용업(종합, 일반, 피부, 손톱·발톱)]
- 평가인력 : 23명 (명예공중위생감시원 20명, 공무원 3명)
- 평가방법 : 평가항목표(평가지침)에 의거 현장방문 조사 및 평가 실시
- 평가결과

구분	등급	이용	미용(종합)	미용(일반)	미용(피부)	미용(손발톱)	총계(개소/%)
관내업소수		107	802	670	456	78	2,113
최우수업소	녹색등급	90	597	512	286	47	1,532 / 79.5%
우수업소	황색등급	2	18	9	10	-	39 / 2.0%
일반관리	백색등급	8	130	108	92	19	357 / 18.5%
계		100	745	629	388	66	1,928

※ - 서비스평가 미 실시업소 185개소(이용 7,미용 178) : 공사 중, 휴·폐업 등
 - 준수사항 미충족업소 350개소 중 휴·폐업,공사중(34개소) 업소를 제외한 316개소 자진정비이행 완료 : 2016.3.24

- 평가총평 : 본문 p(4~5)
- 유공자 표창 : 2명

2016. 3. .

강 남 구
(위 생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(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) 및 제14조(위생관리등급 공표) •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(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-2248, 2015.4.13) •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(서울시 생활보건과-9299호, 2015.4.21) •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추진 계획(위생과-23391, 2015.10.15.) ※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(맨 뒷장) 첨부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, 영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.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명예공중위생감실원 활동비 • 총무과,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, 포상금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공중위생업소 이용 구민
분야 별 검토사항 (계속 : 0) (신규 :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0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서울시 자치구 25개 전부 실시
전문가 자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특별히 전문가 자문 불필요 사항임

2015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(이·미용업)결과

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고취시켜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중위생업소(이용·미용업)를 서비스 평가 지침에 따라 시설·설비 및 위생기준을 평가한 결과임

I 추진 근거

-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⇨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
-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 ⇨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-2248(2015.4.13)
-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⇨ 서울시 생활보건과-9299(2015.4.21)
-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(이·미용업) 계획 ⇨ 위생과-23391(2015.10.15.)

II 연 황

□ 연도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업종

연 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평가업종	세탁업 피부미용업 위생관리용역	이용업 미용업 * 피부미용 제외	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	이용업 미용업 * 피부미용 포함	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* 위생관리용역 제외	이용업 미용업 * 화장분장제외

□ 공중위생업소 현황

(2015. 10. 7일 기준 / 개소)

계	숙박업	목욕업	세탁업	이용업	미용업					위생관리용역	위생처리업
					계	종합	일반	피부	손발톱		
3,084	142	118	388	107	1,962	802	670	456	78	366	1

III 평가 개요

□ 추진기간 : 2015.10.12 ~ 2015.12.31

□ 평가대상 : 공중위생업 2,113개소 (2,069개소 + 중복 업종 44개소)

합 계	이용업	미 용 업								
		소 계	일반	피부	손톱·발톱	종합 (미용업·종합)	일반+ 피부	일반 + 손톱·발톱	피부 + 손톱·발톱	일반+피부 +손발톱
2,069	107	1,962	637	436	44	802	9	23	10	1

* - 2015.10.7일 까지 신고된 업소(평가 대상업소 변경 가능)

- 미용업 세분화 이전의 미용업은 미용업(종합)에 포함

- 미용업(화장·분장)은 신설 업종임을 감안하여 2015년도 평가에서 제외(2015.10.7현재 신고업소 없음)

- 미용업 중 일반+피부, 일반+손톱·발톱, 피부+손톱·발톱으로 영업신고 받은업소는 1개 신고종으로 영업신고를 받았더라도 각 **업태별로 따로 평가 실시**

□ 평가인력 : 23명(명예공중위생감시원 20명, 공무원 3명)

- 업소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,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
-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내·외부 인력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부여
-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1개조(2인/1조) 구성·운영
- 「붙임 1~5」 업종별 평가항목표 활용하여 평가 실시

□ 평가항목

- 평가영역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

* ① 준수사항 : 공중위생관리 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

② 권장사항 :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

- 업종별 평가 항목 ----- 【별첨4】 평가항목표 및 평가지침

구 분	이용업	미용(일반)	미용(피부)
평가항목수	28개	27개	29개
일반현황	업소현황 등(8개)	업소현황 등(29개)	업소현황 등(8개)
준수사항	이용기구 소독장비, 커트, 별실 설치, 1회용 면도날 사용여부,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여부 등 (10개)	미용기구 소독장비, 작업장소 1/3이상 투명기준, 의약품(의료기기) 사용여부 등(9개)	베드, 온장고, 미용기구 소독장비, 작업장소 1/3이상 투명기준, 의약품(의료기기) 사용여부 등(11개)
권장사항	수건, 커트, 이용기구 등 청결여부 등(8개)	수건, 커트, 미용기구 등 청결여부 등(8개)	피부미용기구 소독장비, 온장고, 화장품 등 청결상태 등(8개)
기타(홍보 등) : 접수미반영	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(2개)	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(2개)	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(2개)

구 분	미용(손톱·발톱)	미용(종합)
평가항목수	28개	30개
일반현황	업소현황 등(10개)	업소현황(영업형태) 등(9개)
준수사항	미용기구 소독장비, 작업장소 1/3이상 투명기준, 의약품(의료기기) 사용여부 등(9개)	베드, 온장고, 미용기구 소독장비, 작업장소 1/3이상 투명기준, 의약품(의료기기) 사용여부 등(11개)
권장사항	네일미용기구 소독장비, 수건, 네일미용기구 등 청결여부 등(7개)	미용기구 소독장비, 베드, 온장고, 미용기구 등 청결상태 등(8개)
기타(홍보 등) :접수미반영	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(2개)	위생교육 및 폐업신고 이행 의무 안내(2개)

□ 평가점수 산정 및 등급 결정 ----- 【별첨2】 점수 환산 방법 참조

구 분	등 급	점수기준(100점 만점)
최 우 수	녹색등급	90점 이상
우 수	황색등급	80점 이상 ~ 90점 미만
일반관리대상	백색등급	80점 미만

- ※ - 준수사항(60점)+권장사항(40점)의 득점수의 합을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
 -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 : 백색등급 부여
 - 평가점수 계산(방식) : 붙임6 참조

□ 업무처리 흐름도



IV 총 평

-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2년주기로 시설·영업자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등을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·공포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고취시켜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- 이에 우리구는 2015년 하반기에 이용업·미용업(종합,일반,피부,손발톱)을 대상으로 업종별 평가표(법적준수사항 및 권장사항) 및 평가지침에 의거 업소를 방문하여 총 23여명(명예공중감시원 20, 공무원 3명)을 투입하여 휴·폐업, 공사중업소를 제외한 전업소(100%)에 대하여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였음.
- 또한 2015년 위생교육 미수료 및 폐업신고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(과태료) 206건을 처분(부과)한 바 영업주의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이라 판단되어 2015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항목에 위생교육수료여부 및 폐업신고 의무사항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영업주가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 하였음.
※ 폐업신고미이행 62, 위생교육미필 144건)
-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
 - 전체 평균득점이 86.09점으로 이용업 93.45점, 미용업 중 종합 87.11점, 일반 87.88점, 피부 84.18점, 손톱,발톱 80.71점이며, 최우수(녹색)등급은 이용업(90%), 미용업 중 종합 80.13%, 일반 81.40%, 피부 73.710%, 손톱발톱 71.21%로 이용업·미용업(종합)·미용업(일반)은 대체로 우수한 수준이나, 미용업(피부)과 미용업(손톱발톱)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.
 -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미용업(피부)는 작업장의 출입문의 1/3이상 투명 기준 미준수 및 최종지불 요금표 미게시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, 미용업(손톱발톱)은 영업신고증, 면허증 미게시 및 최종지불요금표 미표시 등 기준미달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.
 - 미용업(피부)이 부진한 사유는 타 업종에 비해 탈의 후 침대에 누워 피부관리를 하는 업종의 특성상 작업장이 개방되는 것을 꺼려하는 고객의 성향에 따른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, 미용업(손톱발톱)은 2015년 4월 17일부터 국가자격 취득제도가 생긴 신규업종으로 아직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영업주의 인지가 부족하다 사료되는 바, 꾸준한 교육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인식개선이 필요 함.

- 업종별·항목별 준수사항 미충족을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(702건) 대비 소독장비 미비치 업소가 13%(91), 미용기구 소독여부에 따른 분리 보관 미준수가 13.8%(97), 작업장 출입문 1/3투명기준 미준수 8%(56),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 미게시가 30.3%(213), 최종지불요금표 미게시 및 기준미달이 31.6%(222), 기타 3.3%(23)로 나타났으며. 특히, 지난 2013년부터 법령개정 후 시행하고 있는 **최종지불요금표 게시**는 한국 소비자보호원, 언론사 등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서비스평가 시 낮은 평가를 받은 바, 아직도 영업주가 요금표 게시 의무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여져, 2015년 서비스평가 등급 통보 시 **최종지불요금표 게시 기준 등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**하였으며, 교육 및 2016년 자율점검 등을 통하여 꾸준한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.

- 또한,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, KBS I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(2015.1.15.) 등에서 고발한 이·미용업에서의 불법 의료기사용, 불법 의료행위 및 안마행위에 대한 금지 안내와 효사랑헤어샵 모집 안내 및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안내문을 동봉 발송하여 약 240만원에 해당하는 우편료를 절감하였음.

- 특히, 법적준수사항 미충족업소 350개소(이용업7, 미용업(종합 125, 일반 108, 피부 92, 손발톱 18개소)는 미충족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기간을 주어 영업주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자진정비 이행토록 유도하였으며, 현재 휴·폐업 및 공사중 업소 34개소를 제외한 316개소가 준수사항을 사후 보완 완료하여 전 업소가 법적 준수사항을 충족 하였음.(2016.3.24.)

※ 공사 중 업소 3개소 [제이드아트헤어(미용/종합), 장뷰티라인(미용업/피부), 압구정스파미용(미용)]
 ⇨ 평가등급 안내문 및 미충족 사항 안내(전달)

- 백색등급(80점미만)을 받은 총357개소 [이용업7(8%), 미용업(종합 130(17.5%), 일반 108(17.2%), 피부 92(23.7%), 손발톱 19(28.8%)개소]는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이 모두 낮게 평가 된 업소로 “관리대상 업소” 로써 꾸준한 지도·점검이 필요 함.

V

서비스평가 결과

□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현황

(단위 : 개소)

구 분	계	이용업	미용업(일반)	미용업(피부)	미용업(손발톱)	미용업(종합)	비고
관 내 업 소 수(A)	2,113	107	670	456	78	802	
평 가 업 소 수(B)	1,928	100	629	388	66	745	
휴폐업·공사중 업소수(C)	185	7	41	68	12	57	
평가 실시율(B/A-C)	100%	100%	100%	100%	100%	100%	

□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

(단위 : 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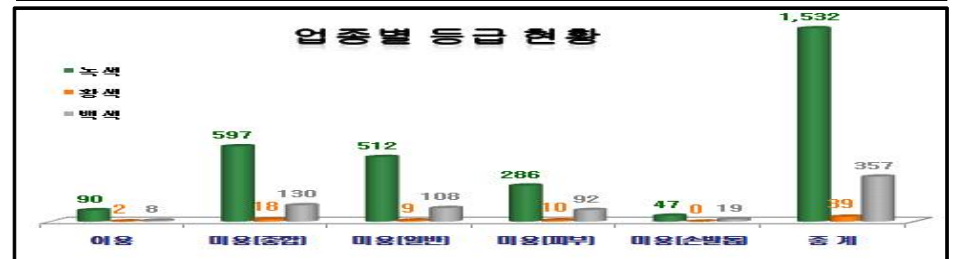
업 종	관 내 업소수	휴폐업·공사중 업소수	평가 결과(업소수)			평 균 점	준 수 사 항 충족 업소 수 (개소 / %)
			소 계	90이상	80~90점		
계	2,113	185	1,928	1,532	39	357	1,578 / 81.84%
이 용 업	107	7	100	90	2	8	93.45 / 93.00%
미 용(종합)	802	57	745	597	18	130	87.11 / 83.22%
미 용(일반)	670	41	629	512	9	108	87.88 / 82.83%
미 용(피부)	456	68	388	286	10	92	84.18 / 65.13%
미용(손발톱)	78	12	66	47		19	80.71 / 71.21%

※ 미충족업소 350개소(이용7, 미용343) ⇒ 자진정비이행 제출 완료(2016.03.24.)

□ 등급 환산 결과

(단위 : 개소)

구 분	등급	이용	미용(종합)	미용(일반)	미용(피부)	미용(손발톱)	총 계
		개소 / %	개소 / %	개소 / %	개소 / %	개소 / %	
관내업소수		107	802	670	456	78	2,113
최우수업소	녹색등급	90 / 90.0	597 / 80.1	512 / 81.4	286 / 73.7	47 / 71.2	1,532 / 79.5%
우수업소	황색등급	2 / 2.0	18 / 2.4	9 / 1.4	10 / 2.6	-	39 / 2.0%
일반관리	백색등급	8 / 8.0	130 / 17.5	108 / 17.2	92 / 23.7	19 / 28.8	357 / 18.5%
계		100	745	629	388	66	1,928



※ 준수사항을 100% 충족하지 않으면 백색등급 부여

Ⅶ 주요 추진 사항

- 2015공중위생서비스평가 계획 수립 ----- 위생과-23391(2015.10.12)
- 2014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 업소 명부 작성 ----- 2015.10.12
- 서비스 평가 사전예고 [위생과-24027(2016.10.23.)]
 - 평가실시 협조 안내문 우편발송(2,069개업소) ----- 2015.10.14
 - 옥외가격표시(최종지불요금표) 부착,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(년1회) 수료 및 폐업 신고 이행 의무 안내 병행 ⇒ 미이행 시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
 - 피부미용업소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위생관리 철저 안내(한국소비자원 배포 보도) ⇒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할 수 있는 시술 금지(고주파기, 초음파기 등 의료기기 사용) ⇒ 미용문신, 미세침 시술(MTS), 카이로프랙틱 등 시술 ⇒ 해면, 수건 등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(자외선살균기 비치 등)
 -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평가실시 공지 ----- 2015.10.12
 - 위생민원팀에 평가실시 안내문 비치 및 인허가 담당자 신고증 교부 시 안내 등 홍보 117건 ----- 2015.10.15.~11.20
- 평가자 교육실시 ----- 위생과-23542(2015.10.16)
 - 교육일시 : 2015.10.13(화) 10:00~12:00
 - 교육장소 : 보건소 2층 회의실
 - 교육대상 :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2명
 - 교 관 : 위생과장(공중위생팀장)
 - 교육내용
 -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방법 및 점검 요령
 - 민원응대요령 및 청렴교육
 -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
 - 실태조사 요령
 - 신고증 교부 후 시설점검 시 유의사항 등 (위생민원팀:김혜진)



- 현장평가 실시
 - 평가기간 : 2015.10.12 ~ 11.27(46일간)
 - 평가자 : 25명(명예공중감시원 22명, 공무원 3명) - 2인 1조(10개조)
 - 평가대상 : 2,113개소 [이용 107, 미용(종합 802, 일반 670, 피부 456, 손발톱 78)]
 - 평가방법
 - 평가항목표 및 지침에 의한 현장방문 조사 및 평가 실시
 - 미 평가 업소 추가 조편성 2,3차 현장방문 조사 및 평가 실시
-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(18,640천원) - 위생과-27619(2015.12.02)
- 평가계산표 자료(엑셀) 입력 및 등급산정(2,113개소) - 2015.12.1~12.31
 - ※ 【별첨1,2,3】 참조
- 평가결과 공고(공표) ----- 위생과-322, 325(2016.01.06)
 - 강남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 : 2016.1.8
 - 강남구보 게재 : 2016.1.8.
 - 전국시군구(226개) 서비스수준평가 홍보 공문 발송 : 2016.1.6
- 평가대상업소에 서비스평가 등급 안내문 발송 -- 위생과-2103(2016.1.26)
 - 녹·황색등급 우편발송 : 총1,571개소(이용업 92, 미용업 1,479)
 - ※ - 백색등급 : 357개소(이용업 8, 미용업 349) →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장 점검 및 계도 시 전달
 - 호혜어샵 모집 및 최종지불요금표 표시 안내문 동봉(이용 100, 미용1,828개소)
 - 이·미용업에서 의료기기 사용, 불법의료행위 및 안마행위 금지 안내
 - 안내문 및 봉투 라벨지 청렴로고 삽입
- 백색등급업소 지도·점검
 - 점검기간 : 2016.1.26 ~ 2.25(1개월)
 - 점검자 : 13명(명예공중감시원 10명, 공무원 3명) - 2인 1조(5개조)
 - 점검대상 : 백색등급업소 357개소 (이용 8, 미용 349)
 - 점검 방법
 - 평가항목표 및 지침에 의한 현장방문 지도·점검
 - 법적준수사항 미충족업소 350개소 자진정비 이행 기간 부여 : 2016.3.24까지
-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서울시 보고 ----- 위생과-319(2016.01.06.)

□ 법적준수사항 미충족업소 자진정비 여부 확인 완료(350개소)

「자진정비 이행결과 보고서(2015년 공중위생업 서비스평가)」 - 위생과-7331(2015.03.28)

○ 업소별 자진정비 이행 결과

(단위 : 개소)

구	분	합계	이용업	미용업				비고
				종합	일반	피부	손발톱	
준수사항위반		350	7	125	108	92	18	
자진정비이행완료		316	7	116	100	77	16	
휴폐업		31		7	8	14	2	
공사중		3		2		1		

○ 업종별·항목별 준수사항 미충족 자진정비 건수.

(단위 : 개소)

구	분	합계	이용	미용업 (자진정비건수/(휴폐업,공사중건수))			
				종합	일반	피부	손발톱
합	계	626/(76)	8/(0)	230/(20)	186/(17)	177/(37)	25/(2)
베드(온열장치포함),화장품,수건,온장고,사물함 미설치		13/(0)		12/(0)		1	
미용기구 소독장비(소독기, 자외선살균기) 비치 및 작동여부 미준수		84/(7)	3/(0)	35/(2)	33/(2)	10/(3)	3/(0)
작업장소, 응접장소, 상담실 출입문 시설기준(1/3이상투명기준) 미준수		48/(8)		6/(2)	2/(0)	40/(5)	0/(1)
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(의료기기 비치)		6/(2)		2/(0)	-	4/(2)	-
아-미용기구 소독여부에 따른 분리보관 미준수		93/(4)	-	40/(2)	36/(1)	13/(1)	4/(0)
영업신고증 미게시		88/(12)	1	38/(3)	27/(3)	17/(6)	5/(0)
면허증 원본 미게시		98/(15)	2	42/(4)	30/(4)	18/(6)	6/(1)
최종지불요금표 내부 미게시		52/(7)	-	23/(3)	14/(1)	15/(3)	
최종지불요금표 외부 미게시(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)		61/(10)	-	13/(2)	19/(3)	26/(5)	3/(0)
외부게시 환불 기준 미준수(영업장 면적66 이상업소)		81/(11)	-	19/(2)	25/(3)	33/(6)	4/(0)
별실 및 별실 유사한 시설 설치		1/(0)	1				
1회용 면도날 1인 1회 미사용		1/(0)	1				

○ 1차(2016.1.26.~2.25) 확인 : 227개소

-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급표 전달 시 미충족사항 안내 및 이행 확인

○ 2차(16.3.1~3.24) 확인 : 89개소

- 1차 방문 시 미이행 업소 자진정비 후 정비여부(사진 등) e-mail 제출

○ 휴·폐업·공사중 업소 제외 : 34개소

□ 서비스 평가자료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입력 ----- 2016.03.23

Ⅶ 유공자 표창 수여

□ 서비스평가 추진 유공자 표창 ----- 총무과

○ 훈 격 : 구청장 표창

○ 유공분야 : 사업유공(2015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및 백색등급업소 지도·점검에 기여)

○ 추천대상 : 공무원 2명

○ 소요예산 : 60만원

○ 예산과목 : 총무과, 원활한구정운영,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,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, 포상금, 포상금

Ⅶ 향후 계획

□ 준수사항 미충족업소 지도·점검에 따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

□ 일반관리대상(백색등급) 업소 대책(357개소) : 2016년중

○ 점검사항 :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(법적준수사항), 권장사항(제도)

○ 점검방법 : 인터넷자율점검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현장점검 등

□ 폐업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(위생교육관리와 연계 추진) : 2016년 상반기

붙임 1. 2015년도 이용·미용업 평가계산표 1부.

2. 위생등급(이용·미용업) 결과(명부). 1부.

3. 평가결과보고 1부.

4. 업종별 평가표 및 지침 1부.

5. 준수사항 미충족업소 자진정비이행 결과 각1부(자진정비이행결과제출서 별첨).

6. 2015 공중위생업(이용·미용업) 서비스평가 계획. 끝.

《관련법령 발췌》

【공중위생관리법】

제13조(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) ① 시·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(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(이하 "평가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31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(이하 "위생서비스평가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31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31>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·방법,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](#)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제14조(위생관리등급 공표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31, 2008.2.29, 2010.1.18>

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31>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31>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·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3.31, 2008.2.29, 2010.1.18>